##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95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홍기원·안규백·강준현

이원욱 • 조응천 • 맹성규

홍정민 • 고영인 • 이장섭

이규민 · 김경협 · 고용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매매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들의 허위·과 장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음.

실례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매물 관련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허위·과장광고적발건수는 5년간 87건에 불과함. 심지어,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며 2020년에는 단 한 건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이뤄지지 않음.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 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 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제58조제3항).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생 략)	금지 행위)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u>자동차매매업자</u> 는 다음 각	③ <u>자동차매매업자(그 대리인,</u>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
다.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② (생	및 관리의 의무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u>자동차매매업자</u> 가 인터넷을	③ <u>자동차매매업자(그 대리인,</u>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u>한다)</u>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